



협회소식

기획발전위원회

제 3차 기획발전위원회 회의개최

명 칭 : 1992년도 제 3차 기획발전위원회
 일 시 : 1992년 7월 8일 (수) 오후 2시
 장 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참 석 자 : 5명 (총 9명)
 • 위원장 : 이두영
 • 위 원 : 기민호, 이용남, 조원호, 한상완

- 안 건 : 1)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에 따른 사항
 • 주제선정
 • 주제발표자 선정
 2) 도서관인 훈, 포장수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 회 의 내 용 ***

1. 성원보고 및 사무국 경과보고
 사무국장 : 위원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김경일) 성원되었음을 알림.
 위 원 장 : 1992년 제 3차 기획발전위원회 회의 (이두영) 개최를 알리고 참석한 각 위원에게 인사말과 함께 사무국 경과보고를 요청.
 사무국장 :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로 다음과 같이 사무국 활동 경과 보고를 함.
 가. 제 2차 기획발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경과 보고
 • 협회 정관개정 (안)
 전국도서관대회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정
 • 협회비 인상 (안)

회비인상이 불가피한 증점사업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10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본협회의 회비인상주기와 인상금액을 정밀조사하고, 타협회의 회비인상률과 상호비교하여 회장단이 결정하도록 함. (이사회의 의결)

- 나. 도서관정보관리편람 발간
 • 도서관정보관리편람 편집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사공 철 교수를 선임.
 • 1992년도 말까지 원고집필 완료
 • 1993년도 2월말까지 편찬

2. 회의안건토의

- 가. 안건1: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에 따른 주제 및 주제발표자 선정
 위원장 :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에 따른 주제 및 주제발표자 선정에 대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
 각위원 : 전국도서관대회 주제 및 주제발표자 선정에 대하여 논의.
 위원장 :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

(결 정 사 항)

- 전국도서관대회 대주제 : 우리나라 도서관행정의 당면과제
- 전국도서관대회 주제 및 주제발표자
 - 기초연설 : 우리나라 도서관행정의 당면과제 (한상완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 1주제 : 도서관행정체제 문제 (이용남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 2주제 : 도서관인사체제 문제 (한성택 : 숭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교수)
 - 제 3주제 : 도서관재정체제 문제 (서혜란 :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학

과 교수)

- 특별강연자는 1인을 외국에서 초청하기로 함.
- 토론자는 해당 주제발표자가 3~4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기로 함.

나. 안건2 : 도서관인 훈, 포장수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결정사항)

- 도서관인 훈, 포장수상자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회의 인준을 거쳐 발족하기로 함.
 - 훈, 포장에 관한 총무처내규 및 문화부내규를 사무국에서 조사하여 제 4차 회의에 제출토록 함.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

분류위원회

제 1 차 분류위원회 회의개최

명 칭 : 1992년도 제 1 차 분류위원회
 일 시 : 1992년 7월 7일(화) 오후 2시
 장 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참석자 : 10명(총 14명)
 • 위원장 : 권기원
 • 위 원 : 김명옥, 김성원, 김용성, 백항기, 오동근, 이은철, 이창수, 임승양, 한복희

안 건 : 1) 위원상견례
 2)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 타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위원상견례

사무국장 : 위원 14명중 10명 참석으로 회의가(김경일) 성원되었음을 알림.

위원장 : 1992년도 제 1 차 분류위원회 개최를(권기원) 알리고 위원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위

원 개개인을 소개함.

2. 회의안건토의

• 안건1 :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에 관한 사항
 위 원 장 : 분류위원회 구성취지 및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뒤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

각 위 원 :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
 위 원 장 :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

(결정사항)

가. 개정작업방법 : 한국십진분류법을 예전과 같이 사회과학분야(000-300) 자연과학분야(400-500), 예술·어문학·역사분야(600-900)로 나누어 이들 분야를 각각 담당할 위원을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별로 제반 개정작업을 추진하도록 결정

소위원회 위원명단

| 구 분 | 소 위원회 위 원 장 | 소위원회 위원 |
|-----------------------------------|-------------|-------------------------|
| A그룹 000-300 (사회과학분야) | 김 명 옥 | 백항기, 이은철, 한복희 |
| B그룹 400-500 (자연과학분야) | 김 용 성 | 김성혁, 김포옥, 남태우, 노정순, 박후용 |
| C그룹 600-900 (예술, 어문학, 역사분야) | 임 승 양 | 김치우, 오동근, 이창수 |

나. 개정작업은 1992년 9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함.

다. 북한의 행정단위는 사무국에서 정부에 문의하여 2차회의에 제출토록 함.

라. "주"를 첨가시켜 이용자의 혼란을 막도록 함.

마. 원고는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함.

- 바. 외국의 지명 기타 외래어의 표기는 한글학회 판 [우리말 큰사전]말미의 “외래어의 한글표기”를 준용하기로 함.
 - 사. 조기표작성 및 상관색인작업 일정은 2차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아. 인덱션은 한국십진분류법 3판을 준용하기로 함.
 - 자. 분류위원회 위원으로 박후용(경희대학교 사서과장)선생을 추가 위촉하기로 함.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

법제위원회

1. 제 1차법제위원회 회의개최

명 칭 : 1992년 제 1차 법제위원회
 일 시 : 1992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장 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참석자 : 8명(총8명)
 위원장 : 손정표
 위 원 : 고기식, 박용두, 양재한, 윤희윤, 이경구, 이은철, 한두완

- 안 건 : 1) 위원상견례
 2) 도서관계법 연구
 3) 도서관진흥법상의 사립공공도서관 설립 기준에 대한 사항토의
 4) 도서관진흥법상의 점자도서관 설립기준에 대한 사항검토
 5) 기타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위원상견례

사무국장 : 위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김경일)원되었음을 알림.
 위 원 장 : 1992년도 제 1차 법제위원회 개회를(손정표)알리고 위원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위

원 개개인을 소개함.

2. 회의안건의토의

가. 안건1: 도서관관계법 연구

위 원 장 : 모든 도서관인은 모범인 도서관진흥법 이외에 도서관에 관련된 법규를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도서관관련법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한 뒤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줄것을 위원들에게 요청.

각 위 원 : 도서관관련법 연구방법에 대하여 토의

위 원 장 :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

(결정사항)

- 도서관관련법에 대한 목록을 위원장이 작성하여 제 2차 회의때 제출하고, 각 위원들이 각 관종별로 분담하여 연구하도록 결정함.

나. 안건2: 도서관진흥법상의 사립공공도서관 설립기준에 대한 사항검토

위 원 장 : 도서관진흥법상의 사립공공도서관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회단체가 설립기준의 조정요청을 도서관정책과에 건의한 것임을 설명한 뒤, 동기준에 대하여 토의해 줄것을 각 위원에게 요청.

각 위 원 : 사립공공도서관 설립기준에 대하여 토의

위 원 장 :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

(결정사항)

- 동기준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이 연구검토하여, 제 2차 회의에 제출토록 함.
- 위원장이 제출한 동기준에 대한 문안을 제 2차 회의에서 수정보완하여 문화부에 협회장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

다. 안건3: 도서관진흥법상의 점자도서관 설립기준에 대한 사항검토

위 원 장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자도서관에서 도서관진흥법상의 점자도서관 설립기

준이 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건의해온 사항으로, 동기준에 대하여 토의해 줄것을 각위원에게 요청

각 위 원 : 점자도서관 설립기준에 대하여 토의
위 원 장 :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

(결 정 사 항)

· 위원장 및 윤희운위원이 동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 2차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정함.

라. 기 타 : 공공도서관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본협회를 경유하여 문화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한 사항 검토

- 1) 재정지원 의무조항 강화
- 2) 사서수당 인상
- 3) 도서관 운영체제의 일원화
- 4) 이동도서관차량 공립공공도서관에 관리이전
- 5) 도서관진흥법 제9조, 10조, 11조, 12조, 44조 개정에 관한 사항

(결 정 사 항)

· 1항 및 2항, 3항은 이경구위원이 맡아 제 2차 회의에 연구검토안을 제출하도록 함.

· 4항 및 5항은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6) 사서자격증 변경발급에 관한 사항

(결 정 사 항)

· 위원장이 맡아 제 2차 회의에 연구검토안을 제출하도록 함.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함.

2. 제 2차 법제위원회 회의개최

명 칭 : 1992년 제 2차 법제위원회

일 시 : 1992년 7월 20일(월) 오후 2시

장 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참석자 : 7명(총 8명)

위원장 : 손정표

위 원 : 고기식, 박용두, 양재한, 윤희운,

이경구, 한두완

안 건 : 1) 법제위원회 연간계획

2) 도서관진흥법 제22조 토의

3) 사서수당 관련법 토의

4) 기 타

회 의 내 용

1. 성원보고

사무국장 : 위원 8명중 7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김경일) 원되었음을 알림.

위 원 장 : 법제위원회 회의개최를 알리고 각 위(손정표) 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함.

2. 회의안건토의

가. 안건1: 법제위원회 연간계획

(결 정 사 항)

· 위원장이 제출한 도서관진흥법 이외의 관련법규 목록을 근간으로 해당 관종별로 각위원이 내용 분석 및 연구를 계속하도록 함.

-총괄분야 : 손정표

-공공도서관분야 : 이경구, 이은철

-대학도서관(4년제)분야 : 고기식, 윤희운

-대학도서관(2년제)분야 : 양재한

-전문, 특수도서관분야 : 한두완, 김상렬

-학교도서관분야 : 박용두

· 법제위원회에서 연간계획으로 실시할 도서관관련법규의 내용분석 및 연구결과를 “도서관관련법규집”으로 출판하는 것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함.

나. 안건2: 도서관진흥법 제22조 토의

(결 정 사 항)

· 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서관진흥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대한 개정의견 및 개정사유를 사무국에서 건의서 형식으로 작성을 완료하고 회장 명의로 문화부에 건의토록 요청함.

(건의서 별첨1 참조)

· 도서관진흥법 제22조 및 23조는 도서관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쟁점법안임을 감안하여 관련기관인 학회와 산하기관인 공공도서관 협의회와 공동명의로 문화부 및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다. 안건3 : 사서수당관련법 토의

(결정사항)

- 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대한 개정의견 및 개정사유를 사무국에서 건의서 형식으로 작성을 완료하고 회장명의로 문화부 및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요청함.
(건의서 별첨 1 참조)

라. 안건4 : 기 타

- 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제 4조제 2항(사서직원 자격요건의 경과조치)”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대한 개정의견과 개정사유를 사무국에서 건의서 형식으로 작성을 완료하고 회장명의로 문화부 및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요청함.
(건의서 별첨1 참조)
 - “사립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문화부측 질의에 대하여 법제위원회에서 연구검토했던 결과를 사무국에서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을 완료하고 회장명의로 문화부에 제출토록 요청함.
(의견서 별첨2 참조)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건의서

각급 도서관 및 산하단체에서 상정된 건의(안)을 본회 법제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I.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제 4조제 2항(사서직원 자격요건의 경과조치) 개정
현행령 시행전에 1급 또는 2급정사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자격증 미발급자와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급 또는 2급 정사서 자격증으로 갱신하지 않은 자는 동시행령부칙 제 4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1993년 4월 8일까지)에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종전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당시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사서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안 협의당시 연구위원회 의견으로 이미 제안된 바도 있는 조항으로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 개정의견 |
|--|--|
| 부칙 제 4조 ① ② 이 영 시행당시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문화부장관에게 해당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 4조 ① ② 이영 시행후 2년이내에 문화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후에 자격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가. 정사서의 경우(준사서는 명칭이 동일하므로 문제없음)는 ‘정사서’라는 명칭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어 온 기간을 보면 도서관법 시행령이

1965년에 처음 제정 공포된 때부터 정사서 자격기준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한 1989년 말경까지 25년이나 되어 이 기간동안 각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7,000~8,000여명의 유자격자중 현재까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수가 도서관계에 있지 않은 사서수보다 적은 실정임. 따라서 모든 해당자 개개인 앞으로 개정내용과 신청 기간등에 관한 공지문을 보내지 않는 이상 관보나 기관지 또는 도서관에 보내는 공문만으로는 충분히 주지 되기가 어려워 다수의 유자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현직 사서들조차도 공공기관이 아닌 중소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의 경우는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례도 있어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이 상실되고만 결과가 초래되어 극단적으로는 아는 사람만 자격증을 교부받아 해당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움.

- 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미 사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정해진 기간내에 1,2급 정사서 자격증으로 바꾸지 않았다하여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지 않은채 영원히 법으로 자격을 상실시켜 무자격자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적 자격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사서들도 종전의 '정사서자격증'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새로이 교부받지 않으면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업무처리상 부득이 현행처럼 신청기간을 설정해 둘 수 밖에 없다면 기간을 어긴 사람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기타방법으로 반드시 다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 : 주민등록 말소나 출생·사망 신고기간 불이행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다. 이 영을 보면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에 의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만 되어 있고 1993년 4월 8일 이후에 근무경력이 6년이 되어 1급 정사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는 신청기한의

제한이 없어 법시행에 형평을 잃고 있음.

II.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개정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 3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대하여 한국점자도서관, 대구대학교부설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법제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그 기준에 비현실적, 비합리적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사 유)

- 가. 현행령의 기준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자료를 매체로 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점자도서관이라는 개념에서의 기준설정이라기 보다는 건물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기계·기구도 증설토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출판배포 활동을 겸한 하나의 교육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설정된 기준임.
- 나. 현행령에 제시된 건물면적 66m²로는 최저 기준으로 제시된 기계·기구들의 비치와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테프)들의 수장, 기타 직원작업 공간의 확보등이 불가능한 기준이며, 이에 대하여는 의견조사결과 각 점자도서관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다음의 최저치에 의한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건물면적 기준을 개정안으로 제시된 수준까지 상향조정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음.

산출근거 :

- 사무실 직원(사서) 1인당 9.2~11.6m², 기타 직원 1인당 6.9m²
- 서가 2련 6단 양면 1개당 점자도서 300권수장, 폐가제의 경우 서가 1개당 3.24~3.56m²
- 개가제의 경우 서가 1개당 5.4m²
- 녹음테프 수장 카드박스 30du 1개당 카세트 테프 330개 수장, 소요면적 1.61m² 및 주위 여유공간 1.5m²

- 점자제판기·인쇄기·타자기 각 1대당 6.9m²
- 녹음기 4대 비치 및 작업공간 약 8m²

- 대출직원 1인 면적 및 대출대 주변공간 : 11.9m²
- 인쇄실 : 21.6m²

개정안에 의한 면적 산출(최저기준임)

- 자료열람실 및 서고 : 45.52m²(전체의 45.9%)
- 열람석 4석×2.8m²=11.2m²
- 점자도서 1,500권÷300권×3.24m²=16.2m²
- 녹음테프 500점 30du 2개×1.61m²+여유공간 3m²=6.22m²

- 점자제판기·인쇄기·타자기 각 1대 3대×7.2m²=21.6m²
- 녹음실 : 8m²
- 녹음기 4대 및 작업공간 약 8m²
- 사무실 직원공간 : 23.2m²
- 관장 및 사서직원 1인, 기타 비품공간 23.2m²
- 총 계 99.32m²

| 봉사대상 | 현행 | | | | 개정 의견 | | | |
|-------|-----------------|---|----|------|--------------------------|---------------------------|---------|---------|
| | 시설 | | 자료 | | 시설 | | 자료 | |
| | 건물 | 기계·기구 | 장서 | 녹음테프 | 건물 | 기계·기구 | 장서 | 녹음테프 |
| 시각장애인 | 면적 : 66제곱미터 |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 | | 면적 : 99m ² 이상 |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 현행령과 같음 | 현행령과 같음 |
| | 서고 : 면적의 25%이상 |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 | 자료열람실 및 서고면적의 45% 이상 | 2. | | |
| | 인쇄실 : 면적의 35%이상 |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 | | |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 | |
| | | 4. 녹음기 4대 이상 | | | | 4. (현행령의 단서조항 삭제) | | |
| | | 다만, 건물면적이 33m ² 증가할때마다 점자제판기 1대, 점자인쇄기 1대, 점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여야 한다. | | | | | | |

비고 가. 건물면적이 99m²이상일 때에는 녹음실, 10%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물면적에는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 가. (삭제)
 나. → 가로 수정요망

다. 현행 기준에 보면 '서고'와 '인쇄실'의 경우는 전체 면적의 몇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

으나, 후술한 '라'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면적 증가에 따른 기계·기구의 증설]이

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쇄실'의 경우는 면적 확보율을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서고'의 경우는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면적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료열람실 공간과 합하여 최소 확보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기계·기구비치 기준은 '가'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이란 자료를 매체로 한 정보봉사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지 출판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의뢰를 받아 제작 배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건물면적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계·기구 각 1대 이상'이라고만 하여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더 갖추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하고,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각 점자도서관 대상 의견조사 결과도 같음.

마. 기계·기구비치 기준중 점자제판기의 경우 '2대 이상' 갖추도록 한 것은 '수동식'제판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조사결과 지금은 수동식 제판기가 제작 판매되지 않고 있고, 수동식에 비해 수배의 처리 능력을 지닌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점자도서관 현장에서도 후자를 갖추기 때문에 수동·자동 구별없이 '1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점자타자기도 '점자인쇄기 1대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대수 이상은 갖추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역시 '1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재정지원 의무조항 강화

현행 도서관진흥법상(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23조:공립공공도서관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국고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만

| 현행 | 개정안 |
|--|--|
| <p>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비는 <u>그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u> <u>다만, 교육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u> ②국가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자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3조(공립공공도서관의 지원) ①문화부장관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문화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 <p>제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① <u>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u></p> <p>② <u>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u></p> <p>제23조(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감독 및 지원) ① <u>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②현행과 같음.</p> |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양화된 이용자층의 욕구를 수용하고 늘어나는 정보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이 당연함.
- 설립주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도서관정책의 일원화에 역행됨.
-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의 설립 비용과 운영비의 일부 부담이 의무화되어야 함.

(이 경우 운영비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함)

- 도서관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된 이상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인 지도·감독은 물론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여야 함.

VI. 사서수당 개정

현재 사서수당은 1983년도에 처음 지급되어(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 정규 사서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서수당이 10년간 동결되어 있어 직원들의 수준까지 상향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또한 교육부에서 예전에 제시한 [도서관발전방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11 4호자목

| 현 행 | | | 개 정 의 건 | | |
|------|---------|--|----------|----------------------------|--|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사서수당 | 사서직 공무원 | 5급이상 : 월 30,000원이하 6급이하 : 월 20,000원이하 | 도서관 업무수당 |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1급정사서 : 55,000원이하 2급정사서 : 35,000원이하 준사서 : 20,000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 |

V. 이동도서관 차량 공립공공도서관에 관리 이관

- 도서관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관성 있는 도서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내부부의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공도서관 성격을 띤 문고 운영 및 이동도서관 형태의 업무는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부 본질의 업무로 관장하도록 운영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절실함.

- 내무부는 현재 시·구청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과 그에 따른 도서자료 및 인력을 당해 지역 공립공공도서관에 관리 이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봉사료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가 절실함.

의 견 서

*사립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적용을 받도록 된 사립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의 하향조정 가능성 여부에 관한 문화부측의 질의에 대하여 법제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쳐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현행 시행령에 제시된 공공도서관 기준을 보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외국의 최저 기준에 비해 자료는 5~10배, 시설은 2~5배, 사서직원은 3~7배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러한 실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너무 낮은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향조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도서관 표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중앙집중식 형태로 중앙관에서 일괄처리하여 배포하고 있는 [분관]조차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보면 240m² 내외의 소분관은 전체 소요직원이 3명으로, 이중 사서직원수는 분관장을 포함하여 적어도 2명, 500m²내외의 중규모 분관은 전체 소요직원이 5~6명으로, 이중 사서직원수는 분관장을 포함하여 적어도 2명, 500m²내외의 중규모 분관은 전체 소요직원이 5~6명으로, 이중 사서직원수는 분관장을 포함하여 적어도 3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더욱 분관이 아닌 독립된 공공도서관일 경우에는 정보자료 조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서직원이 분관보다 더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한 지역사회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이라면 수행하여야 할 기본기능은 공립이건, 사립이건 공히 똑같기 때문에 외국의 최저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하여 하향조정 한다면 [독서실]로서의 기능이외는 정보봉사 기능확대를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며, 법적으로 제

시된 기준은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적 기준이 아님을 아울러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중 자료기준은 [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장서수 증가에 따른 사서직원 증치의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도록 되어 있어 공립공공도서관 기준에 비해 완화된 규정임.

-현행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건물면적에 의한 기준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건물면적 기준보다도 더 낮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 인원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을 더 낮추기란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현행 기준을 봉사대상규모에 의한 기준설정으로 개정할 경우(봉사대상 인구 2만 이하는 2인의 사서직원을 두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1만인당 사서직원 1인 증치)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공립과는 달리 그 지역사회 봉사대상 인구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때문에 현행 기준의 수준과 기준 설정요소로 볼 때 사립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의 하향조정이란 어렵다고 사료됨.

편집출판위원회

제 2 차 편집출판위원회 회의개최

명 칭 : 1992년 제 2 차 편집출판위원회

일 시 : 1992년 7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참석자 : 5명(총 9명)

위원장 : 한상완

위 원 : 양병훈, 이경구, 조인숙, 최정자

- 안 건 : 1) 도서관문화 출판 및 편집계획
 2) 도서관, 정보학교재 발간계획
 3) 기 타

*** 회 의 내 용 ***

1. 성원보고

사무국장 : 위원 9명중 5명참석으로 성원되었음 (김경일) 을 알림.

위원장 : 편집출판위원회 회의개최를 알리고 (한상완) 각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함.

2. 회의안건토의

가. 안건1: 도서관문화 출판 및 편집계획

위원장 : 동안건에 대하여 논의해 줄것을 각위원에게 요청.

각 위원 : 동안건에 대하여 논의

위원장 : 위원회 결정을 발표.

(결정사항)

• 도서관문화 1992년도 7,8월호부터 고정으로 “도협컬럼”을 게재하기로 함.

— 1992년도 7,8월호 “도협컬럼”의 원고는 위원장이 집필하기로 하였으며,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주제로 설정함.

— “도협컬럼”의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7매로 결정함.

— “도협컬럼”의 집필자는 편집출판위원회 위원을 필두로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 기타 관련도서관인 중에서 편집출판위원회가 결정한 주제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여 원고를 청탁하기로 함.

— 집필자 성명은 컬럼 끝부분에 게재하기로 함.

• “도서관발전위원회를 해부한다”란 주제로 원고를 이용남 교수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게 청탁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나. 안건2: 도서관, 정보학교재 발간계획

(결정사항)

• 위원장 : 교재발간에 필요한 모든 자료조사를

사무국 및 위원에게 요청함.

— 교재발간 일정은 사무국에 위임함.

— 현재까지 국내에 발간된 도서관학·정보학교재에 대한 목록을 조사토록 사무국에 요청함.

— 시급하게 발간하여야 할 교재나 발간필요성이 있는 교재가 있는지 각위원이 조사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토록 함.

다. 안건3: 기 타

• [도서관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차기회의에 논의키로 함.

• 제3차 회의 개최를 9월말로 결정함.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공공도서관위원회

제 3 차 공공도서관위원회 회의개최

동위원회는 1992년 7월 10일 춘천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1992년도 제 3차 공공도서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장(한경희) 및 8명의 위원(권재윤, 김정수, 김승철, 이상열, 이세열, 이우식, 조재성, 한성택)이 참석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에 반영될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관계기관에 건의할 사항을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건 | 협 의 내 용 |
|---------------------|---|
| 손·망실도서에 대한 제도적 처리방안 | • 각 시·도 도서관에서 연구 • 좋은 의견을 정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제출하여 줄 것 |
| 독서교실의 효율적방안 |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사서 교육교재의 표준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요망 |
| 도서목록정보 제공의 제도화 | • 도서 출판시 목록정보 제공을 문화부 출판과에 건의 |

| 안 건 | 협 의 내 용 |
|---------------------|--|
| 사서직 국비위탁 교육 기회부여 | · 사서직 해외연수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 도서관정책과에 건의 |
| 관장 직무연수 1회 개최 | ·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 협회에 건의(도협에 단체 가입된 공공도서관장) |
| 실무자 분야별 연수회 년 1회 개최 | · 도서관 협회 가입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 사례중심으로 현장 견학 |
|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 · 능동적인 도서관 봉사 및 봉사망 확충(분관, 각종 문고, 이동도서관, 이동 시청각 교육, 현장문화학교)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 참여 유도 |

한국도서관협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1. 정기총회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1992년 7월 1일부터 11일까지(2일간) 서울시립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86명의 회원이 참석한 동총회에서는 공로상(전남대 민병재 사서사무관) 및 공로패(서울대 고영채 사서사무관) 감사패(서울대 선우중호관장, 경북대 오주환 전관장) 시상이 있었으며 동협의회 활동경과보고,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심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종합대학의 신규수입 외국학술 잡지목록작성 배포 및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교가 결정되었으며, 국립대학도서관 직제개정·사서직 정원

증원 및 전산직 정원배정·92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에 따른 도서비 절감의 시정·국립대학교 도서관장의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을 한국도서관협회 및 관계단체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우리협회에서는 동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2.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동협의회는 1992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2일간) 부산대학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19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세미나의 대주제로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전문화의 문제(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가 채택되었으며, 주제 및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주제1: 연구도서관·학습도서관 이원체제 확립의 문제

공동연구자: 김경희, 박인순, 장숙희, 이시채, 정영희, 박현우, 장덕수

대표집필자: 장숙희

발 표 자: 김경희

- 주제2: 단행본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

공동연구자: 이상재, 최말희, 장화옥, 손정, 김미란

대표집필자: 손 정

발 표 자: 이상재

- 주제3: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

공동연구자: 유익봉, 이수현, 황은주, 신주영, 장향자

대표집필자: 이수현

발 표 자: 유익봉

한국도서관협회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서연수회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

17차 사서연수회가 1992년 7월 9일(목)~7월 11일(토) (3일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연수회에서는 정우현(고려대학교 도서관) 관장과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관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한남대 도서관의 김정대선생이 사례발표를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신학도서관협회에서는 실천신학분야의 심화과정을 중심으로 여름 실무자 세미나를 1992년 7월 14일(목)~16일(목) (3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동세미나에서는 신학사서교육과정(심화과정)과 실천신학분야, 가톨릭 신학분야 및 DDC20판 종교분야 번역판 해설이 주제로 채택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정기총회가 1992년 7월 23일 광주제일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독서교실 우수학생 2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1991년도 활동보고 및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1992년도 사업계획 및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

협회단신

1. 박계홍회장 오찬간담회 참석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김영삼) 및 당직자는 문화예술계 단체장과의 상견례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2년 8월 24일 63빌딩 티파니에서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협회에서는 박계홍회장이 참석하였다. 오찬간담회에 제출된 정책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찬간담회 정책건의사항

| 제 목 | 건의사항 | 비 고 |
|------|--|-----|
| 총괄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정책 자문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책 자문기구를 미국의 LCLIS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대통령과 국회가 일관성 있는 도서관정책을 수립 - 도서관정책을 개발하고 조언하며 국가문헌정보활동에 관련된 각부처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평가 • 국가문헌정보유통 관리체계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헌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문헌정보의 네트워크 구축 • 국립과학도서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과학입국을 지향할 수 있는 기초과학, 첨단과학자료를 수집, 축적 이용시킬 수 있는 도서관설립 | |

| 제 목 | 건의 사항 | 비 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 배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향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관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책정, 도서관예산으로 할애 -국고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치등 다양한 재원확보책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 • 사서직 직급조정 및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직 상한직급인 공무원 행정직군의 4급을 국가공무원 1급까지, 지방공무원은 2급까지 상향조정 -공무원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서직렬을 정보관리직군으로 독립시키거나 연구직으로 편입 -사서자격 국가고시제를 실시하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단체에서 검정시험을 시행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 | <p>*미국에서는 1956년 도서관 봉사법을 연방정부에서 제정하면서 도서관세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p> <p>*일본에서는 도서관 재원을 시세(市稅)로 확보함.</p> |
| 공공도서관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운영체계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도서관을 운영,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부 소관부서에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예산을 통합적으로 편성하고 지급하도록 함. -도서관정책 주관부서인 문화부는 소신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타부서에 운영권이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관작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 | <p>*도서관진흥법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의 일원화를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함.</p> |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제정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에 의거하여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제정공포 -현행 대학설치기준령, 학교법인정관(준칙)의 관련조항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 • 학교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제정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3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에 의거하여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제정공포 -현행 학교설치기준령, 학교법인정관(준칙)의 관련조항등을 현실적으로 개정 | <p>*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도서관 주관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문화된 법령으로 평가됨.</p> |

2.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제30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우리나라 도서관행정의 당면과제”란 주제로 199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 동의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동대회 발표자 및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발표자 및 발표주제

- 기조연설 : 우리나라 도서관행정의 당면과제
발표자 :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1주제 : 도서관 행정체계문제
발표자 : 이용남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2주제 : 도서관 인사체계문제
발표자 : 한성택 (숭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교수)
- 제3주제 : 도서관 재정체계문제
발표자 : 서혜란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과 교수)

가. 영남전문대학

동대학은 7월 30일자로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대표전화 : (053)66-2154 626-5651 | (053)620-9114 |

나. 한국고등교육재단

동재단은 7월 15일자로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도 서 실 | 568-8186 | 554-3513 554-3512 |
| FAX | 557-3192 | 554-3511 |

회원동정

1. 단체회원 동정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서울전화 사용 | 대표전화 (02)863-4770 | 前과 同一(교환경유→내선연결) • 내선번호 : () () () 번 |
| 안산국 전화사용 | 실별직통 | 교환대수용 : DID방식 • 교 환 : (0345)81-6000 • 부서직통 (0345)81-6() () () 번 |
| 기술정보실 | | • 교환 : (0345)81-6460~6463 |

라. 획슨 한국지사

획슨 한국지사는 1992년 8월 1일자로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이전주소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5번지 로얄빌딩 531호
- 전화번호 : (02) 723-6961(대표), 6962, 6963, 6964

• FAX : (02) 723-6965

2. 개인회원동정

• 우리협회 개인회원인 권현구씨가 1992년 3월 1일자로 김해 삼성국민학교에서 김해 구봉국민학교로 전근되었다.

전화번호 : (0525) 35-2441

사무국 일지

- 7월 7일 분류위원회 회의(제1차) 개최
- 7월 8일 기획발전위원회 회의(제3차) 개최
- 7월 9일 도서관 정보관리편람 소위원회 회의개최
- 7월 14일 편집출판위원회 회의(제2차) 개최
- 7월 16일 분류소위원회(B팀) 개최
- 7월 20일 법제위원회 회의(2차)개최
- 7월 22일 도서관발전위원회 회의(제1차) 개최
- 7월 28일 홍보협력위원회 회의(제2차) 개최

<내방인>

- 7월 3일 김효정(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이용남(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7월14일 윤병태(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7월21일 이두영(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이용남(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한상완(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7월22일 한성태(숭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교수)
- 7월23일 윤 영(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7월28일 현영아(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8월 4일 이선직(과천 도서관관장)
- 8월10일 유태석(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선생
- 8월11일 이종익(한국 3M(주))선생
- 8월12일 최은주(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8월13일 사공 철(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이두영(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8월18일 전세영(Faxon한국지사)지사장
- 8월19일 한상완(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한성태(숭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교수)

신입회원

<단체회원>

양천구 새마을도서관

(재)한국영상자료원

합천도서관

춘성도서관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인회원>

조은경(창원지방방법원 도서관)

임경자(서울시립목동도서관)

이현숙(서울시립대학교중앙도서관)

고미경(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자료부)

<평생회원>

김선현(국방과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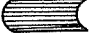
이숙자(서울특별시립강서도서관)

김성원(한국통신연구개발단 정보관리실)

이두영(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최종화(홍익대학교 도서관)

유철중(홍익대학교 도서관)

 신착교환자료 

'92도서관현황(1992, 교육부)

國立大學圖書館月報(No. 10 國立大學圖書館協義會)

國會圖書館報(No. 221 國會圖書館)

도서관(No. 302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No. 302 국립중앙도서관)

圖書館學(No. 19 韓國圖書館學會)

미국소설안내(박은자)

세계로 열린창(No. 16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立法調査月報(No. 210 國會事務處)

장서목록-동양서-(1992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문화(No. 320, 321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연구(No. 4 한국출판연구소)

출판저널(No.108~111 출판저널)

한국과학기술원학위논문초록집(1991.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학술잡지목록(1992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문헌지동목록법 (국립중앙도서관)
 韓國出版年監 (1992. 大韓出版文化協會)
 國立國會圖書館月報 (No. 373,375, 國立國會圖書館
 圖書館協力部)
 圖書館雜誌 (Vol.86, No. 5~7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界 (Vol. 44, No. 2, 日本圖書館研究會)
 びふろす (Vol. 43, No. 3.6 國立國會圖書館圖書館
 協力部)
 東アジア文學術情報交流の高度化に向けて (1989. No
 1, 1990 No2 1991 No3 學術情報センタ |)
 東アジア文學データの國際交換に關する實證研究(學
 術情報センタ |)
 IFLA JOURNAL (Vol. 18, No. 2 IFLA)
 KOREA JOURNAL (Vol. 32, No. 2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NEW ZEALAND Libraries (Vol. 47, No. 2
 NEW ZEALAND Librarie Association)
 NEWS LETTER (IFLA)
 NATIONAL DIET LIBRARY NEWSLETTER
 (No. 87 National Diet Library Cooperation
 Department)
 OCLC Newsletter (No. 196, 197 OCLC)
 OCLC Reference Services (OCLC)
 Reading In Toronto Annual Report (1991.
 Toronto Public Library)
 RIGHTS (Vol 6, No.2 Service of Creativity)

Specialist (Vol. 15, No.347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 배부의뢰자료 ▬

참고서지外 1종 (30부 국방대학원)
 흥원군지 (200부 흥원군민회)
 인촌기념회사 (821부, 동아일보사)
 광운대요람 (910부, 광운대학교)
 학위논문外 1종 (81부, 상명여자대학교)
 녹지 25外6종 (855부, 중앙대학교)
 공군 217호外1종 (260부, 공군대학교)
 신착군사자료속보 제12호 (15부, 국방대학원)
 KBS연지 (837부, 한국방송공사)
 서강外 1종 (210부, 서강대학교)
 논문집外 2종 (294부, 성균관대학교)
 논문집外 2종 (549부, 서울교육대학교)
 신착자료속보 (13부, 국방대학원)
 서울 공원 녹지조경 설계사례집 (213부, 서울시립대
 학교)
 군사연구총서 25권外 1종 (50부, 육군사관학교)
 문화방송연감 (140부, 문화방송)
 청여논총 19집外 7종 (1,118부, 청주대학교)
 육사논문집 (110부,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15집外 1종 (516부, 동양공업전문대학교)

■ 신간안내 ■

- 美國圖書館思想의 研究/小倉親雄著·朴熙永譯/아세이문화사/국판/서울/360p./1990년/6,000원
 연락처: 중구 장충동1가 48-24, 전화: 279-9266
- 圖書館學 學術論文綜合索引/덕성여자 대학교/도서관학과 학생회/4.6배판/서울/276p./1991년/특판
 12,000원, 보급판 5,000원
 연락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49번지, 전화: 902-8121(교)404